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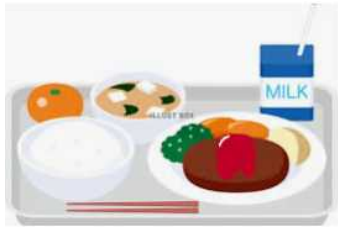
취학원조 안내

후쿠오카시 교육위원회

취학원조 제도란

시내의 시립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분 또는 시내에 거주하면서 국립·현립 초등학교·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분이 있으신 세대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학교에서의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세대**를 대상으로 「취학원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급식비



● 학용품비 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올해부터 지급항목에 「**온라인 학습 통신비**」가 추가되었습니다.
- ★신청시에 첨부하는 서류 (세 증명, 아동부양수당 증서)가 원칙적으로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상세내용은 뒷면 「1. 취학원조 대상이 되는 세대 및 준비하실 증명 서류」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올해 부터 수입이 감소한 분은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상담해 주십시오.

상세내용은 뒷면 「1. 취학원조 대상이 되는 세대 및 준비하실 증명 서류」의 「⑦」를 확인해 주십시오

※ 취학 원조 신청은 매년 필요합니다

※ 1월에 입학 준비금 (입학 전에 지급) 을 신청하여 인정받으신 분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항목 · 지급방법

지급항목	초등학교		중학교		내용
	대상학년	지급액	대상학년	지급액	
급식비	전학년		전학년		청구·구좌에서 자동인출은 없습니다
학용품비 등 (연액)	1학년	13,230엔	1학년	25,040엔	각 학기말의 3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왼쪽 표기는 4월부터 인정받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2~6학년	15,500엔	2, 3학년	27,310엔	
입학준비금	1학년	51,060엔	1학년	60,000엔	인정을 받은 달이 4월인 세대만 지급됩니다
수학여행비	6학년		2학년		참가 후에 각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에는 3~5개월이 소요됩니다. ※참가시점에 취학원조대상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비, 교외활동비는 지급상한액이 있습니다.
사회과 견학비	5학년		—		
교외활동비 (숙박을 동반)	전학년		전학년		구입 후에 각 학교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3학기말에 지급됩니다. ※구입시점에 취학원조대상이 아니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상한액이 있습니다.
졸업앨범비 등	6학년		3학년		
체육실기용 구비 (유도복만 해당)	—		전학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만을 대상으로 각 학기 종료 후에 지급합니다. ※지급 요건은 각 학교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학비	전학년		전학년		
재해지급비	전학년		전학년		사실 발생 후에 지급합니다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금액	내용
온라인학습 통신비	집에 온라인 학습 가능한 통신 환경이 마련되어 있는 세대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을 계약하여 온라인 학습 환경이 정비되어 있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아파트에서 계약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12,000엔 (1세대 당)	시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인원 수와 상관없이 세대 별로 왼쪽에 기재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간 중에 통신환경설치 계약을 한 세대는 계약하신 달의 다음달 금액이 지급됩니다. 각 학기마다 3회에 나누어 지급합니다. ※2021년도 1학기분은 9월경에 지급 예정입니다. (왼쪽의 기재는 4월 부터 인정받은 경우의 금액입니다)

※ **급식비, 온라인 학습 통신비** 시립 초 · 중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취학 원조의 대상이 되는 분, 신청수속 등에 관해서는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취학원조의 대상이 되는 세대 및 준비하실 증명서류

생활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 요건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분(보호자 전원이 동일한 요건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요건		증명서류																														
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생활보호가 폐지·정지되신 분	생활보호 정지·폐지 결정 통지서																														
②	시·현민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고 계신 분	원칙적으로 불필요 ※과세 기준일 (2020년도→2020년도1월1일, 2021년도→2021년1월1일) 에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있는 분만 해당 (주의1,2)																														
③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의 전액 감면을 받고 계신 분	국민연금보험료 면제신청승인통지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감면승인결정통지서 등 (신청시에 전액감면을 받고 있을 것)																														
④	직업안정소에 등록된 일용직 노동자 또는 생활복지자금대출제도의 대출을 받고 계신 분	일용직노동피보험자 수첩 또는 생활복지자금대부결정통지서 등																														
⑤	한부모 가정 등으로 아동부양수당을 받고 계신 분	원칙적으로 불필요 ※구역외의 취학 등으로 후쿠오카시외에 거주하는 분으로 아동부양수당을 받는 분은 거주지에서 발행한 아동부양수당증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⑥	시민세 소득할액과 현민세 소득할액의 합산금액이 아래표 「16세 미만의 자녀분의 인원수 및 기준액」에 적혀진 기준액 이하이신 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신청시기</th> <th rowspan="2">세증명 연도</th> <th colspan="6">16세 미만의 자녀분 수 및 기준액</th> </tr> <tr> <th>1명</th> <th>2명</th> <th>3명</th> <th>4명</th> <th>5명</th> <th>6명</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 5월31일까지</td> <td>2020년도</td> <td>99,800 엔</td> <td>135,300 엔</td> <td>170,800 엔</td> <td>208,800 엔</td> <td>244,300 엔</td> <td>279,800 엔</td> </tr> <tr> <td>2021년 6월1일 이후</td> <td>2021년도</td> <td>99,600</td> <td>135,100</td> <td>170,600</td> <td>208,600</td> <td>244,100</td> <td>279,600</td> </tr> </tbody> </table> <p>[16세 미만의 자녀분 수] • 2020년도의 경우 ... 2004년1월2일~2020년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분 수 • 2021년도의 경우 ... 2005년1월2일~2021년1월1일 사이에 태어난 자녀분 수</p>	신청시기	세증명 연도	16세 미만의 자녀분 수 및 기준액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2021년 5월31일까지	2020년도	99,800 엔	135,300 엔	170,800 엔	208,800 엔	244,300 엔	279,800 엔	2021년 6월1일 이후	2021년도	99,600	135,100	170,600	208,600	244,100	279,600	원칙적으로 불필요 ※과세 기준일 (2020년도→2020년도1월1일, 2021년도→2021년1월1일) 에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있는 분만 해당 (주의1,2) (주 1) 과세기준일에 후쿠오카시에 주민표가 없는 경우는 시현민세를 증명하는 서류 (과세소득증명서)를 제시해 주십시오 (주 2) 세금 신고가 끝나지 않은 경우 (급여소득만으로 연말조정을 하는 분을 제외함) 는 심사가 불가능하므로, 수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세무서 또는 각 구청에서 신고해 주십시오 ※2020년도의 세액 ... 2019년 중 (2019년1월~12월) 의 수입에 대한 세액 ※2021년도의 세액 ... 2020년 중 (2020년1월~12월) 의 수입에 대한 세액 세액의 확인방법 (세증명서로 확인하는 방법) 은 HP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시기			세증명 연도	16세 미만의 자녀분 수 및 기준액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2021년 5월31일까지	2020년도	99,800 엔	135,300 엔	170,800 엔	208,800 엔	244,300 엔	279,800 엔																									
2021년 6월1일 이후	2021년도	99,600	135,100	170,600	208,600	244,100	279,600																									
⑦	상기의 ①~⑥에 해당하지 않지만 (2021년도의 세액도 기준을 넘는다), 특별한 사정으로 2021년 중(1월~12월) 의 수입 예상이 인정 기준 이하로 인정되는 분 ※2021년1월부터 최근 달까지의 수입 등을 기준으로 연간 수입 예상 및 상정 세액을 계산합니다. 세액이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취학원조 대상이 됩니다.	2021년도 시·현민세를 증명하는 서류 (2021년6월이후에 취득가능예정) 및 수입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상세 내용은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에 확인해 주십시오.)																														

※ 증명서류는, 원칙적으로 보호자인 부모 2명분 모두 필요합니다.(한부모 가정 등은 제외)

자녀를 부모가 아닌 분이 부양 중인 경우, 그 증명서류도 필요합니다

※ 증명서류 취득에는 시간이 걸리는 경우, 4월부터 통학 예정인 초·중학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로 미리 상담해 주십시오.

2. 신청에 필요한 것

(1) 상기에 기재된 증명서류

※증명서류는 신청하는 세대당 1부씩 준비해 주십시오. 자녀분 인원수를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신청서 (4월1일 시점에서 15세 이상의 동거 친족 전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각 초중학교에서 배부합니다. 또한 후쿠오카시 HP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 통장이나 현금카드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송금 구좌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3. 신청장소

「재적 중인 학교의 사무실(새롭게 중학교 1학년이 되는 경우, 3월 중은 초등학교, 4월이후는 중학교)」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 (후쿠오카시 주오구 덴진 1초메 8-1 후쿠오카시청 11층)」

※초등학교와 중학교 둘다에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학교에만 신청해 주십시오.

※국립·현립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입학예정 또는 국립·현립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미 다니고 있는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에 신청해 주십시오.

4. 신청시기

신청시기	인정·지급
3/1 (월) ~5/31 (월)	2021년4월부터 인정·지급
6/1 (화) ~7/30 (금)	신청한 달부터 인정·지급 (단, 요건 2·6·7로 신청하여 2021년도 과세액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2021년 4월부터 인정·지급)
8/2 (월) ~다음해3/31(목)	신청한 달부터 인정·지급

※ 상기의 내용과 상관없이 시외로부터 전입한 경우는 그 전달 이전에 대해서는 인정·지급하지 않습니다. (전입 전의 시정촌에 문의해 주십시오)

5. 문의처

●●학교 (TEL : 092-●●●-●●●●)

또는 교육위원회 교육지원과 (TEL 092-711-4693)

